

###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##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호	600
나.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2호	600
다.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1호	2,000
라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3호	600
마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	법 제51조제1항	3,000

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	제1호	
바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1호	5,000
사.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4호	600
아.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2호	2,000
자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3호	2,000
차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3호	400
카.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·평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4호	1,200
타.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5호	600
파. 법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5호	1,200
하.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6호	600
거. 법 제22조제1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7호	1,000
너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6호	2,000
더.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, 설명,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8호	600
러.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9호	600

머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0호	600
버. 법인인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2호	3,000
서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2호	1,500
어. 법인인 자가 법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,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3호	5,000
저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,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3호	2,5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1,000만원으로 한다.
처.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7호	2,000
커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4호	3,000
터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2호	1,000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	
연락처	02-2100-2971